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7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조인철 · 허 영 · 박희승
정준호 · 민형배 · 안도걸
이해민 · 양부남 · 박용갑
박수현 · 정진욱 · 서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처벌·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적·다단계적 범죄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총책·기획책 등 핵심 가담자를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 근절과 범죄 수익 추적·환수에도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특히, 핵심 가담자의 검거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 내부자의 제보·협조를 유도할 체계적 형벌감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와 협조를 유도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기반의 전기통신금

용사기 범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또는 제보·협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관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 또는 감경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감면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다</u> <u>음 각 호의 자가 수사·재판절</u> <u>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u> <u>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u> <u>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u> <u>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범죄수</u> <u>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u> <u>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u> <u>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u> <u>수 있다.</u> <u>1. 제15조의2의 죄를 범한 자</u> <u>2.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관</u> <u>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u> <u>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u> <u>3조,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u> <u>의 죄를 범한 자</u> <u>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또</u> <u>는 제보·협조에 관한 정보 및</u> <u>자료는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u> <u>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u> <u>기관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u> <u>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u>

	<u>는 면제받은 자가 그 면제 또는 감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감면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u>
--	---